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28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1301	박희승	2024.7.2.	2024.8.2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201520	김문수	2024.7.9.	2024.11.14.

나.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2026.2.26.)

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건 명	의안번호	소위원회 심사일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1301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1.19.)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2015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1.19.)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595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회 및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할 수 있음.
-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할 수 있음.
- 7)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함.
- 8)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가능함.
-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할 수 있음.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감독함.
-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5. 이 법에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16.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등

제6조(임원)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총장)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로 본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총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그 밖에 의학교육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이사회 소집 등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평의원회)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조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평의원회의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회의 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재무회계 등

제13조(사업연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수익사업)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학사 등

제22조(교직원 등)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장이 임면한다.

- ③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원의 임면)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학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정하되,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학위과정 등)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9조(학사위원회)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사위원회
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
원 전임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사가 추천하는 위원이 2명 이상 임명되
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보건복
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학위수여) 총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게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1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7조에 따라 선발
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3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3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제3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반환금을 납부한 사람이 그 이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환급하되, 제34조에 따른 의무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총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반환금의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육 및 실습)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
한 의료기관

제34조(의무복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
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
서 15년 동안 업무에 종사할 것(이하 “의무복무”라 한다)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
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3.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4. 제4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5.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6.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산입방법 등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무복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종류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무복무기관에의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2.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소관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및 배치 기준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의무복무의사별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하여 이를 해당 의무복무의사,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및 기준,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보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①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무복무의사의 겸직금지) ① 의무복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실적을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복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무복무의사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경비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의무복무의사가 제34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무복무기관의 장이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3조(면허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제42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제1항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3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제44조(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해당 의무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를 위반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 국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특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2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 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